

제10 회 뉴욕시 권익옹호의 날: 뉴욕시 이민자들을 위한 행진

2010 년 4 월 13 일

2010 뉴욕시 정책과 예산 입안에서 이민자의 요구사항: 이민자의 정의와 기회증진을 위한 청사진

이민자와 저소득층 뉴욕 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지

- **영어학습(ESL) 예산 확대** 이민자 기회증진 예산(Immigrant Opportunities Initiative)과는 별도로 이민자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장이 편성한 3 백만 달러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성인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영어 교육 서비스 10 년 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
- **중요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유지** 이민자 학생들의 대규모 낙제사태를 방지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 **시의회가 선정한 우선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인 보건,병원 지원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법률 서비스 확대** 이민자 기회증진 예산의 항목으로 편성된 2 백만 달러를 증액해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커뮤니티 단체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불법 개조 주택의 합법화로 주거공간 창출

- 현행 주택법이나 zoning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안전성이 보장된 개조 주택을 합법화시켜 서민용 주거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커뮤니티부터 실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 자금 집행 감시

- 뉴욕경기부양위원회(New York Stimulus Alliance)에 적극 개입해 이민자를 포함한 재정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커뮤니티에 경기부양 자금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

학교, 가정, 커뮤니티 협력관계 향상

- 가정과 커뮤니티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뉴욕시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언어, 가족 구조를 보유한 이민자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와 가정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뉴욕시 교육국은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민자 학부모들이 학교 출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학부모 신분증을 발급하며, 각 가정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교육국은 효과적인 학교와 커뮤니티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가정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높은 수준의 학교 시설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아이티계 이민자 지원 예산 유지

-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임시 합법신분 취득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명령 120 (Executive Order 120)의 원활한 시행

- 이민자를 위한 언어 서비스를 규정한 시장의 행정 명령 120 을 모든 시정부 기관이 제대로 준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지원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정부가 조성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기 부양 자금으로 편성된 150 만 달러의 지원예산이 노동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로 하여금 저임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이민단속법 시행 금지

-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민단속국(ICE)이 발행한 영장만으로는 이민자를 함부로 연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난 수 년동안 이민단속국은 릿커스 아일랜드를 비롯한 뉴욕주 여러 지역에 소재한 구치소에 출몰해 이민단속을 감행해 왔다. 여기에서 이민 단속국은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채 범죄자의 이민 신분을 조사해 무차별로 추방대기소로 이송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

건물주 등록 제도 법제화

- 이 법안은 상용 건물의 건물주가 법인체 이름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의 이름도 시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건물주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은 세입자인 소상공인이 월세 지불, 건물 수리 요구 또는 그밖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건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법안 상정 대표 시의원: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Melisa Mark-Viverito)

시조례 750 조(Intro 750)를 시행해 주거지의 위생 상태 개선

- 이 법안은 건물주가 주거 공간에서 천식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거지 청결 유지 규정이 단속이 가능한 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뉴욕시 주택국이 해충이 그득한 주택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사관과 건물주, 건물 매니저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법안 상정 대표 시의원: 로지 멘데즈 Rosie Mendez.)

병가 임금 지급

- 이 법안은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고용인이 최대 9 일의 유급 병가를 갖고, 소규모 자영업에 근무하는 고용인은 최대 5 일까지 유급 병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 현재 이 법안은 37 명의 시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법안 상정 대표 시의원: 게일 브루워 Gale Brewer.)

상가 렌트 조정 조례안 (Small Business Survival Act) 실행

- 이 법안은 상가 건물 리스 재계약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렌트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자영업업을 폐쇄할 위기에 처한 뉴욕시의 약 158,000 개의 자영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법안 상정 대표 시의원: 로버트 잭슨 Robert Jackson.)

이민자의 공원 이용 활성화

- 뉴욕시 공원관리국에 이민자 커뮤니티 담당 직원을 두어 이민자의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